‘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 캠프’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Ⅰ.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740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19년 5월 24일

4. 회부일자 : 2019년 5월 30일

Ⅱ. 제안이유

1. 2017년 서울시교육청-(사)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업무협약에 근거한 위탁사업 추진

2. 2018년 하반기 시의회에 2019사업계획(민간위탁사업)으로 제출

3. (사)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의 국제적 네트워크 및 인력 활용을 통한 충실한 사업 운영

Ⅲ.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2019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2017년 서울시교육청-(사)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업무협약 체

결을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2017년부터 3회째 지원하는 사업임

※ 업무협약 내용: 동아시아청소년역사체험캠프 운영

- 매년 동아시아 3국(한,중,일)간 국제네트워크 및 인력을 활용한 협력으로 공동기획 및 공동운영해왔음(2002년 시작, 2019년 제18회 개최)

- (사)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측 캠프 운영의 전문성 활용 필요

3.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사업기획 및 운영

- 대상자 선정 및 교육활동 전체

4. 민간위탁 기간: 2019.~9월

5. 수탁자 선정방식: 업무협약에 따라 수탁자 지정

6. 예산 규모: 금40,000천원(금사천만원)

Ⅳ.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사업계획 (별첨 1)

나. 관계 법령

o 서울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별첨 2)

o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별첨 3)

Ⅴ.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740호로 제출되어 2019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21세기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만들기 위한 한·중·일 청소년들의 미래의 선도적 역할을 모색해보는 “2019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 및 사업이해도가 높은 기관(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민간위탁 추진 개요

○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와[1] 「동아시아 교사·청소년 국제교류 및 평화교육을 위한 협약」을 체결(2017.3.9.)하면서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미 2017년 제16회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 캠프를 공동 주최한 바 있습니다.

[표1]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연혁

1)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는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 교과서의 역사왜곡을 바로잡고, 20세기 침략과 저항의 역사에 대한 아시아 공동의 역사인식을 위해 2001년 4월 23일 90여개의 시민, 사회, 학술단체가 모여 결성한 NGO임.
- 2003년 단체명칭을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로 변경하고, (사)아시아평화와 역사연구소를 설립하여 한중일 역사갈등 해결을 위한 역사인식 문제와 교과서 문제에 대한 각종 연구사업 및 대중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여러 시민, 사회, 학술 단체들과의 연대 활동을 통해, 과거사 청산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음.
  * 주요 사업 : 한중일 공동역사교재 편찬, 한중일 청소년 역사체험 캠프.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

구분	개최년도	개최지	주제
1회	2002. 8	대한민국 서울	한국과 일본, 새로운 하나 됨 : 한일 청소년의 힘으로!
2회	2003. 7	일본 관서	전쟁 없는 세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3회	2004. 8	대한민국 안양	1945.8.15-동아시아 역사인식의 공유
4회	2005. 8	중국 베이징	광복 60주년-동아시아를 하나로! 평화로! 미래로!
5회	2006. 8	일본 오키나와	오키나와로부터 아시아의 평화로!
6회	2007. 8	대한민국 제주	전후 역사와 동아시아 평화 만들기
7회	2008. 8	중국 난징	난징에서 생각하는 동아시아 화해와 평화
8회			신종인플루엔자로 취소
9회	2010. 8	일본 치바	동아시아 100년, 평화와 교류의 21세기를!
10회	2011. 8	대한민국 인천	교류의 도시 인천에서 마주하는 평화
11회	2012. 7	중국 대련	다양성이 공존하는 대련에서 생각하는 역사와 미래
12회	2013. 8	일본 교토	일본의 고도:도쿄에서 교류, 평화화해를 젊은이의 손으로
13회	2014. 8	대한민국 충남	동아시아, 1894 갈등을 넘어 2014 평화를 말하다
14회	2015. 8	중국 상해	청소년과 동아시아의 미래 : 전후 70년의 사고
15회	2016. 8	일본 홋카이도	홋카이도의 역사와 문화에서 배우로 미래를 만들자!
16회	2017. 7	대한민국 서울	서울에서 평화와 민주주의의 길을 걷다
17회	2018. 7	중국 장춘	장춘에서 생각하는 역사와 평화 (안)
18회	2019. 8	일본 도쿄	동아시아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자

○ 이번 캠프는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주관 하에 「동아시아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자! 동아사아의 화해와 핵 없는 세계로의 길」을 주제로 2019년 8월 7일부터 8월 12일까지 5박6일 간 일본 도쿄 일대에서 진행되며, 한·중·일 청소년 및 관계자 약 210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국제적 네트워크와 인력을 갖춘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와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2]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사업 추진 현황

연도	2017	2018	2019
장소	대한민국 서울	중국 장춘	일본 도쿄

주제	서울에서 평화와 민주주의의 길을 걷다	장춘에서 생각하는 역사와 평화	동아시아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자
참가자 (전체)	한중일 학생 87명, 인솔자 65명	한중일 학생 104명, 인솔자 64명	한중일 학생 124명, 인솔자 65명
참가자 (서울)	학생 20명, 교사 3명	학생 14명, 교사 4명	학생 23명, 교사 3명
예산액	금40,000천원	금21,868천원	금40,000천원

나. 민간위탁 동의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제10조에[2]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3] 따르면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동 동의안의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사업은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동아시아 3국(한·중·일)의 역사인식,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청소년 역사체험 분야에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

2) 제10조(위탁)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의 민간위탁 동의 대상사무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다. 민간위탁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 동 사업은 한·중·일 학생과 교원 등이 함께하는 역사체험캠프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3국의 평화, 민주주의, 역사교육을 공유하고 다국적 학생·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체험캠프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와 함께 캠프의 주요 활동이 유적지 현장답사, 역사인식, 조별 토론, 강연, 전통문화 체험 등 한·중·일 청소년들의 현장체험과 토론 중심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동아시아 3국과 협조하여 프로그램 구성, 개최지 및 주제 선정, 참가자 선발, 통역 지원 등을 수행하기에는 국제적 네트워크의 부재, 행정지원 인력 부족, 전문 지식 및 경험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3]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프로그램

○ 주　제 : **「동아시아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자-동아시아의 화해와 핵 없는 세계로의 길」**
○ 일　시 : **2019.8.7.(수) ~ 2019.8.12.(월), 5박6일**
○ 장　소 : 도쿄 일대, 메이지 대학교 등

날짜	오전	오후	저녁
8/7 (수)	- 한국 팀 답사 진행	- 참가자 입국 - 참가자 접수	- 개회식 및 환영만찬 - 아이스브레이크
8/8 (목)	- 강연(1) ·당신도 제5 후쿠류마루에 타 보지 않겠습니까?(아서 버나드)	- 답사(1) ·제5후쿠류마루 전시관	- 조별활동(1) ·조별토론 ·조별 장기자랑 준비
8/9 (금)	- 강연(2) ·야스쿠니 문제와 전쟁책임 (다카하시 데쓰야_도쿄대학	- 답사(2) ·야스쿠니 신사, 유슈관 ·해신기념관, WAM	- 조별활동(2) ·조별토론 ·조별 장기자랑 준비

	대학원 교수)		
8/10 (토)	- 공동수업 ·한국전쟁과 전후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 조별 시티투어 ·5개조로 나뉘어 투어 - 조별 저녁식사	- 조별활동(3) ·장기자랑 준비
8/11 (일)	- 조별활동(4) ·조별토론 정리 및 발표	- 조별활동(5) ·장기자랑 준비	- 폐회식 - 장기자랑/오픈카페
8/12 (월)	- 해산 / 한국 팀 답사 진행 - 참가자 귀국 ※ 상기 일정은 현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이런 점에서 동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하기 보다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참고로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서울시교육청과 캠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동아시아 역사인식을 공유하고 청소년 역사체험캠프를 운영해 온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것에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자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서울특별시교육청

동아시아 교사·청소년 국제교류 및 평화교육을 위한

협 약 서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이하 '아시아역사연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시교육청')은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아시아역사연대와 서울시교육청이 동아시아 평화를 지향하는 교사 및 청소년의 국제 교류 및 교육에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이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

제3조(상호협력 분야)

아시아역사연대와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

1.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교사 ·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공동 기획 및 운영**
   - 2017년 「제16회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공동주최
   -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 포럼」 운영 협력
   - 아시아역사연대 행사에 서울교사 우선 참가 및 학교 협조 지원

2.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역사 교재 공동 개발 및 보급 협력**
   - 『동아시아 평화교육』(가칭) 공동 개발
   - 『미래를 여는 역사』,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등 공동역사교재 사용 확대

3. **역사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자료 공동 개발 및 보급 협력**
   - 아시아역사연대의 성과와 결과물을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중·고 역사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자료로 활용
   - 초·중·고 역사동아리 운영 지원 및 자료 제공

제4조 (협의회)

아시아역사연대와 서울시교육청은 기타 공동 관심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실무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제6조(협약의 효력 및 변경·해지)

1.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별도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본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2017년 3월 9일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서울특별시교육청**
상임대표 안 병 우	**교육감 조 희 연**
안 병 우	